

■ 지하수법 시행규칙 [별표 7] <개정 2025. 10. 1.>

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(제31조 관련)

1. 지하수보전구역에 설치된 다음의 시설

- 가. 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
- 나. 「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
- 다.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
- 라.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

2. 지하수보전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다음의 시설

- 가. 「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(해당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11조,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실시명령을 받거나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)
- 나.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
- 다.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

비고: 지하수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지하수 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않아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서 제외한다.